

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지속적으로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당초 : 「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」
- 변경 : 「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나. 기금 일몰제도를 반영한 조항 신설(안 제4조의2)

- 기금의 존속기한 : 2021년 12월 31일까지

다.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정비(안 제6조)

-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직 위원 구성

라.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, 결산 규정 및 회계관직 등 정비

(안 제7조, 제9조, 제10조)

마. 기금 사무에 관한 위탁 조항 신설(안 제8조의2)

바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3. 조 례 안 : 붙임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
「양성평등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”를 “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구미시노인복지기금”을 “구미시 노인복지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구미시노인복지기금”을 “구미시 노인복지기금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시장은 매 회계년도”를 “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회계연도”로, “계상 할”을 “계상할”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은행법제3조”를 “「은행법」 제3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이자수입금중 매년 10%이상”을 “이자수입금 중 매년 10퍼센트 이상”으로, “재적립 할”을 “재적립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를 “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

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구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를 “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구미시 정책기획실장, 안전행정국장, 경제통상국장, 건설도시국장, 구미보건소장
2. 대한노인회구미시지회 사무국장
3.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6조제4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회계년도 개시전”을 “회계연도 개시 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당해년도”를 “해당연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 기금운용상”을 “그 밖에 기금 운용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

- 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미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1항)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1항)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
제8조제1호 중 “운영에 수반되는 내용”을 “운영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1항)제2호 중 “지도육성”을 “지도육성 지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1항)제3호 중 “운영”을 “운영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1항)제4호 중 “참여와 지도”를 “참여 지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1항)제5호 중 “운영”을 “운영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1항)제7호 중 “발간”을 “발간에 관한 지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1항)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

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8조에 속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·범위, 위탁의 방법·절차 등에 대하여는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9조제1항제2호 중 “분임운용관”을 “분임기금운용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기금출납원 : 노인복지담당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연도마다 세입·세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하고, 기금의 집행은 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제규정을 준용한다.

제12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구미시노인복지기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
규정에 따른 구미시노인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노인복지
기금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
「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
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「구미시노
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
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조례</u>	<u>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 노 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 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<u>구미 시노인복지기금</u> 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구미 시 노인복지기금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기금의 설치) 구미시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 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<u>구미시노인복지 기금</u> 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	제2조(기금의 설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미시 노인복 지기금</u> ----- -----.
제4조(기금의 재원) ① · ② (생 략) ③ <u>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1 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 에 계상 할 수 있다.</u> <u><신 설></u>	제4조(기금의 재원) ① · ② (현행 과 같음) ③ <u>구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회계연도</u> ----- -- <u>계상할</u> -----.
	<u>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 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 일까지로 한다.</u>
제5조(기금운용관리) ① (생 략)	제5조(기금운용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적립기금은 은행법 제3조의
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공채 또
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한
다.

③ 운용기금은 기금의 이자수입
금중 매년 10%이상을 기금증식
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.

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
음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
정에 의한 구미시노인복지기금
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3.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
제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기금의
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구미시
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 회
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
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----- 「은행법」 제
3조-----

--.

③ ----- 이자수
입금 중 매년 10퍼센트 이상--
----- 재적립할 -----.

④ -----
--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
6조에 따른 구미시 노인복지기
금 운용심의위원회-----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그 밖에 -----
제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-----
----- 구미
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
회-----
-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
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
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
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
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
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

③ 위원장은 부시장,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실장, 안전행정국장, 경제통상국장, 건설도시국장, 구미보건소장, 대한노인회구미시지회 사무국장,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(생략)
2. 당해년도 기금의 사용계획
3. (생략)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

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구미시 정책기획실장, 안전행정국장, 경제통상국장, 건설도시국장, 구미보건소장
2. 대한노인회구미시지회 사무국장
3.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----- 그 밖에 -----.

제7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 ----- 회계년도 개시 전-----.

② 제1항에 따른 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해당연도 -----
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에 기금 운용상 -----

인정되는 사항

<신 설>

제8조(기금의 용도) ① 운용기금
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
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
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
할 수 없다.

1. 노인 여가시설, 경로당 시설
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내용
2. 대한노인회구미시지회 및 각
읍·면·동 노인회 지도육성
3. 노인 공동작업장 및 노인 능
력은행 운영
4.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
5.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
6. (생 략)
7. 구미 노인신문, 잡지 발간
8.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
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
다 세입·세출 예산안과 함께
구미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
다)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
한다.

제8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
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
1. -----
--- 운영 지원
2. -----
----- 지도육성
지원
3. -----
----- 운영 지원
4. ----- 참여 지원
5. ----- 운영
지원
6. (현행과 같음)
7. ----- 발간에
관한 지원
8.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과 관

<u>사항</u> ② <u>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.</u> <u><신 설></u> 제9조(회계관직 지정)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,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. 1. (생 략) 2. <u>분임운용관</u> : 사회복지과장 3. <u>출 납 원</u> : 노인업무담당주 <u>사</u>	<u>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</u> <u><삭 제></u> 제8조의2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8조에 속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·범위, 위탁의 방법·절차 등에 대하여는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제9조(회계관직 지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분임기금운용관</u> ----- 3. <u>기금출납원</u> : 노인복지담당
---	---

② (생략) 제10조(결산 및 보고) <u>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 제11조(관계규정의 준용) <u>기금의 집행은 구미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제규정을 준용한다.</u> 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<u>관하여 필요한</u>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② (현행과 같음) 제10조(결산 및 보고) <u>시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연도마다 세입·세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u> 제11조(관계규정의 준용) <u>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하고, 기금의 집행은 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제규정을 준용한다.</u> 제12조(시행규칙) ----- - <u>필요</u>----- -----.
--	--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

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~ ④ 생략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생략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~ 차. 생략

3. ~ 6. 생략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~ ② 생략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

할 수 있다.

④ 생략

□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생략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~ ⑤ 생략

소관 실 · 과		사회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류 은 주
	담 당	이 재 근
	담 당 자	오 은 주 (480-5154)